

- 2022년도 제1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-

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7일

태백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선발 예정 인원

직 급	직 렬	직 류	선발인원	비 고
	총 계		7	
9급	전 산	전 산	1	
	공 업	일반화공	1	
	의료기술	의료기술	1	
		임상병리 방 사 선	1	
	시 설	일반토목	3	

2 시험 과목

직 급	직 렬	직 류	시 험 과 목 (1·2차 병합시험)
9급	전 산	전 산	(필수2)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
	공 업	일반화공	(필수2) 화학, 유기공업화학
	의료기술	의료기술	(필수2) 생물, 공중보건
		임상병리 방 사 선	
	시 설	일반토목	(필수2) 물리, 응용역학개론

3 시험방법 및 일정

□ 시험방법

- (서류전형) 응시자격 심사
- (필기시험) 1·2차 시험 병합 실시
 -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제(시험시간 40분), 4지 택 1형
- (면접시험)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검정
- (합격자 결정 방법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

□ 시험일정

공 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'21.12.27.(월)~ '22.01.14.(금)	'22.01.12.(수)~ 01.14.(금)	서류	-	-	'22.01.19.(수)
		필기	'22.01.19.(수)	'22.01.23.(일)	'22.01.25.(화)
		면접	'22.01.25.(화)	'22.01.27.(목)	'22.01.28.(금)

* 위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*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태백시청 홈페이지(시정소식/알림마당/시험정보)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4 응시 자격

- (응시제한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
* 적용기준일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《 지방공무원법 》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《 지방공무원 임용령 》

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《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》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- (응시연령) 18세 이상 / 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
- (거 주 지)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

① (전산, 일반화공, 의료기술)

- 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 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 또는 인근 시군(동해시, 삼척시, 정선군, 영월군)으로 되어 있는 사람
 - * 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

① (일반토목)

- 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 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사람
 - * 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

②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- *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,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합니다.

○ (자격증 제한)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

-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
 - *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사항 해당없습니다.
- 자격증은 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.

계 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	기 술 사	기능장 기 사(6년) 산업기사(9년)	기 사(3년) 산업기사(6년)	기 사 산업기사(3년) 기 능 사(4년)	산업기사 기 능 사(2년)

직급	직렬	직류	자 격 증	
9급	전 산	전 산	기 술 사	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
			기 사	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
			산업기사	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
9급	공 업	일반화공	기 술 사	화공, 세라믹, 화공안전, 가스, 품질관리, 식품
			기 능 장	위험물, 가스
			기 사	화약류제조, 화공, 산업안전, 가스, 품질경영, 식품, 화학분석
			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위험물, 산업안전, 가스, 품질경영, 식품
			기 능 사	화학분석, 위험물, 가스
9급	의료기술	의료기술	임상병리	임상병리사
		방사선	방사선사	
9급	시 설	일반토목	기 술 사	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
			기 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, 방재
			산업기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
			기 능 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

- (접수기간) 2022.01.12.(수)~01.14.(금) / 3일간
 -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- (원서교부)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로드
- (원서접수)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 / 본관 2층
- (접수방법) 방문, 등기우편
 - (우편주소) 우)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,(황지동)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
 -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, 접수사항 유선 확인 필수
 - ※ 응시원서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를 구입하여 동봉하고,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(반신용 소봉투에는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)
- (응시자 제출 서류)
 - ① 응시원서 1부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cm×4.5cm) 사진 2매 부착
 - (응시수수료) 5,000원 / 태백시 수입증지 부착, 태백시청 1만원실 구입
 - 우편 접수 시 해당금액 상당 우체국통상환증서 동봉
 - ② 이력서 1부
 - ③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정도) 1부
 - ④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 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 - 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
 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⑦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
- 필수자격증(응시자 전원), 가점자격증(해당자)

⑧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(또는 법인인감)이 있어야 하며, 발급담당자의 서명(날인), 연락처 기재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,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,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비상근(시간단위)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
(근무경력기준: 1일 8시간, 주 40시간 /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)
- 시민단체 활동, 자원봉사,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-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(날인) 받아 제출
-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
- ※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, 응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

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 1부

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급
-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(근로 계약서,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서 등) 제출

6

가산점 적용

□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-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
의사상자 등	-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- 의사상자 등 가산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.

○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*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되며,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자격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, 당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(경력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40% 이상 득점하고,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입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MP3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및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(유의)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임용결격사유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(033-550-2028)으로 문의하시기
바라며, 공고내용은 태백시청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.